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 학사관리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학과 대학원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물리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통합과정, 박사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시험

제3조(학과전형)

학과전형은 구술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된다.

제4조(평가)

-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전공 지식과 능력,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 ② 박사과정은 전공 지식과 능력, 연구계획서, 추천서를 평가한다.

제3장 학점취득

제5조(교과목지도 및 이수학점)

- ① 석사과정은 총 6과목의 석사과정 공통과목(고전전기역학I,II, 양자역학I,II, 고전역학, 통계물리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과목을 총 24학점 수강하여야 한다.
- ② 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60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③ 박사과정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과목을 총 36학점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1.>

제6조(보충과목이수)

대학원 물리학과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입시전형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부과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시험)

-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의 학생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16.>
- ② 보충과목을 부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양자역학, 고전전기역학 총 2과목으로 하고 각각의 과목에서 70%이상 득점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90분이다.
- ④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Thesis Proposal Presentation, 양자역학, 고전전기역학 총 3과목으로 하고 각각의 과목에서 pass 등급을 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40분이며 Thesis Proposal Presentation은 심사위원회(지도교수 외 1인 학과 교수로 구성)가 평가한다. 양자역학, 고전전기역학은 석사과정 종합 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풀되 구술 시험의 형식으로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지도교수는 평가 결과를 제공되는 평가표에 기재하여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23.07.25.>

⑤ 종합시험의 출제와 감독은 학과장이 위탁 관리한다.

⑥ 각 과정의 필기종합시험 결과는 학과장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8조(지도교수 선정)

대학원 합격통지 후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교수 자격기준)

석사 및 박사과정생의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전임교수로 한다.

제10조(지도학생수에 대한 제한기준)

<삭제 2023.03.16.>

제5장 논문제출 자격

제11조(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석사24, 박사60)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제 12조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영어시험 합격자(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 중 택일)만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된 어학능력시험(TOEIC 585점, TOEFL PBT 500점에 준하는 점수, TEPS 468점 이상, 외국인 학생의 경우 TOPIK) 또는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3.03.16.>

제12조(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 학과 내규)

① 논문제출 이전까지 Science Citation Index 수록 잡지에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단, 학생이 제1저자 이어야 하고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게재 허가 이메일을 최종심사 전까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01.>

② 학위 청구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학과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위 논문 심사

제13조(논문심사위원)

① 석사과정의 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가 본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되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 학과나 타 대학, 기타 국내외 관련 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1인까지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25.>

② 박사과정의 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가 본인 포함 교내외 총 5인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4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5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25.>

제15조(논문수정)

논문심사 기간 중에 부분적인 수정을 할 수 있으며,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후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심시에는 1심, 2심의 심사 보고서를 각각 제출한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1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적용)

상기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효력)

상기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